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66

2017년 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10월 31일, 서울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 심사보류】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2월 20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성인지 및 젠더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로,

○ 성평등·성인지 교육, 젠더 감수성 향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가칭)여성NGO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1]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성평등·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 운영, 성평등 및 젠더감수성 관련 체험학습장 운영, 여성주의 활동가 및 소모임 대상 시민사회단체 설립·운영 컨설팅 지원 등임.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설치 추진 경위 및 추진 현황

○ (가칭)여성NGO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 및 청년 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는 동 센터 설치를 위해 아래 표에 제시된 추진경과와 같이 `12년부터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설치 사업 추진 경과>

- 2012. 5월 : 여성NGO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회의
- 2012. 6월 : 서울 여성NGO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문조사
- 2013.11월 : 여성 NGO 청책토론회에서 여성NGO센터 설립 제안
- 2014. 6월 : 서울혁신파크 조성 계획 시 여성NGO센터 입주 결정
- 2014.12월 : 서울시 여성 NGO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과제)
- 2016. 8월 : 서울시 여성NGO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회의 개최(2회)
- 2016. 9월 : 서울시 여성NGO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동 센터는 향후 서울혁신파크(은평구 소재)내 공간(288㎡ 내외)을 활용 하고, 2017년 7월 개소 예정임. 동 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운영 조직(안)은 다음 그림과 같음.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금번 2017년 예산으로 총 2억 6천만 원(6개월 분)을 편성해 놓은 상황임.

<(가칭)여성NGO 지원센터 운영 조직(안)>

- 조직구성 : 2팀 7명 (센터장 1, 팀장 2, 사원 4)
-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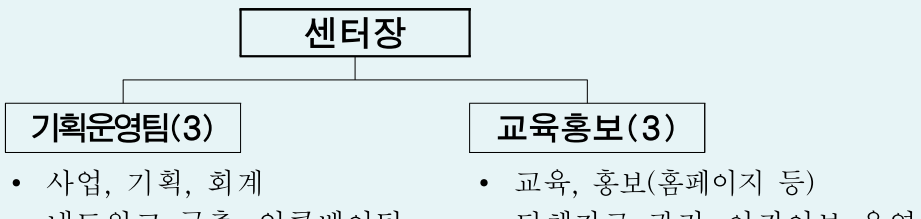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와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성평등·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 운영, 성평등 및 젠더감수성 관련 체험학습장 운영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

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는 현행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2]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적합여부와 동 조례 제6조[3]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볼 때도, 상기의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성평등 및 젠더 감수성 체험 학습장 운영 및 성평등·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아이디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시에서는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유사 시설 또는 유사 사업간 유사· 중복 여부 또는 차별화 전략 등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 인 '성주류화지원센터'가 고유사업으로 기 운영되고 있고, 동종·유사 시설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 중이며,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서울시 NPO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성평등 교육 및 지원하는 유사 사업으로는, 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 운영(대상: 공무원)'사업과 성평등기금 사업에서도 성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사업을 지원(2016년 기준 6억9천만 원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유사시설 또는 사업과의 유사·중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존 유사 · 동종 기관/시설 및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근거한 통폐합 또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서울시가 여성NGO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큼. 하지만, 서울시 제출 자료에서도 보여주듯이, 여성NGO지원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준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준비과정의 일환인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예산편성 이전에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절하지 아니함. 이 때문에 본 동의안은 지난 예산심의 때 민간위탁 동의안 사전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안임. 따라서 향후에는 금번과 같은 사전절차 이미행 문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의 관행적 행정은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여성재단 등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자료1. <기존 유사 시설/사업에 대한 비교표>

분류	여성 NGO지원센터	서울시 NPO지원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주류화지원센터 (여성재단내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조 1항 ○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성평등정책효과증진을 위한 증진을 위한 자문 및 위탁기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
운영체계(조직)	2팀7명	2실4팀14명	2003년 설립	○ 재단 여성정책실 하부조직으로 운영 ○ 센터장 1인(실장), 연구원 1인(과장), 전담연구원 1인(기간제), 연구지원 1인(공무직)
기능 및 역할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 시민 대상 성평등•성인지 교육장 및 체험학습장 운영 성평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활동가(소모임) 대상 인큐베이팅 지원 성인지적 관점의 온라인 커뮤니티 및 여성주의 활동가 역량 강화 등	-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 시설 및 설비 등 제공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훈련 등 인재육성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등	-성인지 정액교육사업 -폭력예방교육사업 -전문강사 양성교육 -네트워크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자문, 교육지원을 통한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체계 및 제도 정착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법령 및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검토의견서 작성 ○ 성인지 예산 컨설팅 ○ 컨설팅 환류 점검 ○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및 우수사례 발굴 ○ 포럼 개최
예산	260백만원	1,878백만원		84,000천원

서울특별시 여성 NG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466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성인지 및 젠더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로,

나. 성평등·성인지 교육, 젠더 감수성 향상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년 (2017. 7. ~ 2019. 6.)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260백만원

나. 주요 위탁사무

○ (가칭)여성NGO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성평등·성인지 및 젠더 아카데미 운영
- 성평등 및 젠더감수성 관련 체험학습장 운영
- 여성주의 활동가 및 소모임 대상 시민사회단체 설립·운영 컨설팅
- 성평등 이슈 등 공동 의제 개발을 위한 공유·토론 및 회의 공간 지원
- 여성주의 개인활동가 대상 Co-Working Zone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우리 사회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주체로서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활동가들의 젠더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성평등·성인지 교육, 젠더 감수성 향상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 및 제41조

제28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5.14.>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심주현(☎2133-5022)